

① 기본사항	① 성명				② 주민등록번호			
	③ 주소				④ 전자우편주소			
⑤ 납세지	※ 12월31일(사망한 경우 사망일, 출국의 경우 출국일)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은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							
⑥ 주소지 전화번호				⑦ 휴대전화번호				
⑧ 신고유형	35 분리과세			⑨ 신고구분		10 정기신고, 20 수정신고, 40 기한후신고		
② 환급금 계좌신고		10 금융기관명		11 계좌번호				
③ 세무대리인	12 성명		13 사업자등록번호				-	
							-	
				14 전화번호				

구	분	합 계	㉓ 주택임대 사업소득	㉔ 기타소득 (계좌입금·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)	㉕ 기타소득 (가상자산 양도·대여)	㉖ 연금소득
㉑	과세표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6)의 ㉑ 과세표준란의 금액					
㉒	세율: 「지방세법」 제93조제10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		1.4%	2.0%	2.0%	1.5%
㉓	산출세액: (과세표준㉑ × 세율㉒)					
㉔	세액감면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6)의 ㉔ ×10%					
㉕	결정세액: ㉓-㉔					
㉖	가산세액: 무(과소)신고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, 납부지연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가산세, 기타란에는 「지방세법」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	무(과소)신고				
		납 부 지 연				
		기 타				
		합 계				
㉗	추가납부세액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6)의 ㉗ ×10%					
㉘	합계: ㉕+㉖(합계란 금액)+㉗					
㉙	기납부세액					
㉚	납부(환급)할 세액: ㉘-㉙					

㉕ 종합소득금액(분리과세 소득 제외)	[] 2천만원 초과	[] 2천만원 이하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본 문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